용인 고림지구 H6BL(3차) 양우내안愛 더 센트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용인 고림지구 3차 양우내안愛 더 센트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사이버견본주택(http://www.yangwoo-gorim3.co.kr)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운영 관련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방문일 기준 2주 이내 해외여행 이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객 대장 작성)
- 기타 견본주택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 검증 서류제출 기간 및 계약일정 등 당사의 공급일정 중에는 해당자 외 견본주택의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용인 고림지구3차 양우내안愛 더 센트럴 견본주택 내 분양상담전화(☎1661-4648)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자세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과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청약 관련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여러분들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고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2020. 07. 10)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1.06.**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일부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 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광역시(강화·옹진 제외),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투기과열지구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 수성구,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광역시(동구·중구·서구·유성구)

※ 투기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세종특별자치시(행복도시 예정지역)

■ 본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에 따라 청약가점제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됩니다.(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table>
<tr><th colspan="2">당첨된 주택의 구분</th><th colspan="2">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th></tr>
<tr><td colspan="2">-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3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6호)</td><td colspan="2">10년간 (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td></tr>
<tr><td colspan="2">-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td><td colspan="2">7년간 (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td></tr>
<tr><td colspan="2">-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td><td colspan="2">5년간</td></tr>
<tr><td rowspan="4">-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
(제3조제2항제1·2·4·6·8호)</td><td rowspan="2">과밀억제권역</td><td>85㎡이하</td><td>5년</td></tr>
<tr><td>85㎡초과</td><td>3년</td></tr>
<tr><td rowspan="2">그 외</td><td>85㎡이하</td><td>3년</td></tr>
<tr><td>85㎡초과</td><td>1년</td></tr>
</table>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재28조 규정에 의거 청약접수 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 나머지 25%를 추첨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를 추첨제로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제한기간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06.)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용인시 처인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 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승인 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 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yangwoo-gorim3.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 (인천,경기), 지방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및 대출규제 안내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 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주택법시행령」[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세대당 1건으로 강화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우선 대납하고 향후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 일시에 이자를 납부하는 이자후불제이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재당첨제한)이 적용되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모든 주택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2순위로 청약가능)합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1, 2순위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1항 각호의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직장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획득한 자는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공공주택지구의 주택(민영주택은 제외)은 10년,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5년, 이외의

주택은 3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사업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주택의 매매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의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용인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1순위 해당지역 (용인시 1년이상 거주)	1순위 기타지역 (용인시 1년 미만 / 경기 / 서울 / 인천 거주)	일반2순위 (경기/서울/인천)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11월 17일 (화)	11월 18일 (수)	11월 19일 (목)	11월 20일 (금)	11월 26일 (목)	12월 08일 (화) ~ 12월 10일 (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10:00~14:0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 512-3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용인시 주택과 - 67605호 (2020. 11. 0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23-3번지 일원 고림지구 H6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9층 8개동 총 627세대
[특별공급 266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62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62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24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0000853	01	064.6939A	64A	64.6939	20.3570	85.0509	36.3275	121.3784	39.6855	81	8	8	16	2	34	47	3
		02	064.9643B	64B	64.9643	20.7678	85.7321	36.4794	122.2115	39.8513	82	7	7	16	1	31	51	3
		03	064.9803C	64C	64.9803	20.5551	85.5354	36.4884	122.0238	39.8612	50	5	5	10	2	22	28	2
		04	064.9803D	64D	64.9803	20.5551	85.5354	36.4884	122.0238	39.8612	52	5	5	10	2	22	30	2
		05	076.3262A	76A	76.3262	23.4095	99.7357	42.8595	142.5952	46.8211	46	5	5	9	1	20	26	2
		06	076.1810B	76B	76.1810	23.6775	99.8585	42.7779	142.6364	46.7321	75	8	8	15	2	33	42	3
		07	076.3191C	76C	76.3191	23.1029	99.4220	42.8556	142.2776	46.8168	25	3	3	5	1	12	13	1
		08	076.3049D	76D	76.3049	23.1143	99.4192	42.8476	142.2668	46.8081	54	5	5	11	2	23	31	2
		09	084.9943A	84A	84.9943	25.2315	110.2258	47.7269	157.9527	52.1384	82	8	8	16	2	34	48	3
		10	084.9998B	84B	84.9998	25.1050	110.1048	47.7300	157.8348	52.1418	53	5	5	11	2	23	30	2
		11	084.9790C	84C	84.9790	24.9519	109.9309	47.7183	157.6492	52.1291	27	3	3	5	1	12	15	1
	합 계										627	62	62	124	18	266	361	24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 우선배정 세대(24세대)는 총 공급세대 627세대에 포함되어 있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공급 세대 수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1회차(10%)	2회차(10%)	3회차(10%)	4회차(10%)	5회차(10%)	6회차(1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21.02.18	2021.06.04	2021.10.01	2022.03.04	2022.08.01	2022.12.02	입주지정일
064.6939A	81	1	3	74,565,500	189,434,500	264,0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79,200,000

		2	3		195,434,500	270,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81,000,000	
		3	3		201,434,500	276,0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82,800,000	
		4	3		207,434,500	282,0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28,200,000	84,600,000	
		5	3		210,434,500	285,0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28,500,000	85,500,000	
		6	3		213,434,500	288,0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28,800,000	86,400,000	
		7	3		216,434,500	291,0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87,300,000	
		기준층	60		219,434,500	294,0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88,200,000	
064.9643B	82	1	2	74,877,000	192,323,000	267,200,000	26,720,000	26,720,000	26,720,000	26,720,000	26,720,000	26,720,000	26,720,000	80,160,000	
		2	3		198,323,000	273,20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81,960,000	
		3	3		204,323,000	279,200,000	27,920,000	27,920,000	27,920,000	27,920,000	27,920,000	27,920,000	27,920,000	83,760,000	
		4	3		210,323,000	285,20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85,560,000	
		5	3		213,323,000	288,200,000	28,820,000	28,820,000	28,820,000	28,820,000	28,820,000	28,820,000	28,820,000	86,460,000	
		6	3		216,323,000	291,20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87,360,000	
		7	3		219,323,000	294,200,000	29,420,000	29,420,000	29,420,000	29,420,000	29,420,000	29,420,000	29,420,000	88,260,000	
		기준층	62		222,323,000	297,200,000	29,720,000	29,720,000	29,720,000	29,720,000	29,720,000	29,720,000	29,720,000	89,160,000	
064.9803C	50	2	2	74,895,600	196,804,400	271,700,000	27,170,000	27,170,000	27,170,000	27,170,000	27,170,000	27,170,000	27,170,000	81,510,000	
		3	2		202,804,400	277,700,000	27,770,000	27,770,000	27,770,000	27,770,000	27,770,000	27,770,000	27,770,000	83,310,000	
		4	2		208,804,400	283,70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85,110,000	
		5	2		211,804,400	286,70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86,010,000	
		6	2		214,804,400	289,70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86,910,000	
		7	2		217,804,400	292,70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87,810,000	
		기준층	38		220,804,400	295,700,000	29,570,000	29,570,000	29,570,000	29,570,000	29,570,000	29,570,000	29,570,000	88,710,000	
064.9803D	52	2	2	74,895,600	196,804,400	271,700,000	27,170,000	27,170,000	27,170,000	27,170,000	27,170,000	27,170,000	27,170,000	81,510,000	
		3	2		202,804,400	277,700,000	27,770,000	27,770,000	27,770,000	27,770,000	27,770,000	27,770,000	27,770,000	83,310,000	
		4	2		208,804,400	283,70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28,370,000	85,110,000	
		5	2		211,804,400	286,70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28,670,000	86,010,000	
		6	2		214,804,400	289,70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28,970,000	86,910,000	
		7	2		217,804,400	292,70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29,270,000	87,810,000	
		기준층	40		220,804,400	295,700,000	29,570,000	29,570,000	29,570,000	29,570,000	29,570,000	29,570,000	29,570,000	88,710,000	
076.3262A	46	1	2	87,972,600	223,527,400	311,500,000	31,150,000	31,150,000	31,150,000	31,150,000	31,150,000	31,150,000	31,150,000	93,450,000	
		2	2		229,527,400	317,500,000	31,750,000	31,750,000	31,750,000	31,750,000	31,750,000	31,750,000	31,750,000	95,250,000	
		3	2		235,527,400	323,50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97,050,000	
		4	2		241,527,400	329,500,000	32,950,000	32,950,000	32,950,000	32,950,000	32,950,000	32,950,000	32,950,000	98,850,000	
		5	2		244,527,400	332,500,000	33,250,000	33,250,000	33,250,000	33,250,000	33,250,000	33,250,000	33,250,000	99,750,000	
		6	2		247,527,400	335,500,000	33,550,000	33,550,000	33,550,000	33,550,000	33,550,000	33,550,000	33,550,000	100,650,000	
		7	2		250,527,400	338,500,000	33,850,000	33,850,000	33,850,000	33,850,000	33,850,000	33,850,000	33,850,000	101,550,000	
		기준층	32		253,527,400	341,500,000	34,150,000	34,150,000	34,150,000	34,150,000	34,150,000	34,150,000	34,150,000	102,450,000	
076.1810B	75	1	2	87,805,400	224,594,600	312,40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31,240,000	93,720,000	
		2	2		230,594,600	318,400,000	31,840,000	31,840,000	31,840,000	31,840,000	31,840,000	31,840,000	31,840,000	95,520,000	
		3	2		236,594,600	324,40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32,440,000	97,320,000	
		4	2		242,594,600	330,40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99,120,000	
		5	2		245,594,600	333,400,000	33,340,000	33,340,000	33,340,000	33,340,000	33,340,000	33,340,000	33,340,000	100,020,000	
		6	2		248,594,600	336,400,000	33,640,000	33,640,000	33,640,000	33,640,000	33,640,000	33,640,000	33,640,000	100,920,000	
		7	2		251,594,600	339,40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33,940,000	101,820,000	
		기준층	61		254,594,600	342,40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34,240,000	102,720,000	
076.3049C	25	2	1	87,964,600	228,535,400	316,50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94,950,000	
		3	1		234,535,400	322,50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96,750,000	
		4	1		240,535,400	328,50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98,550,000	
		5	1		243,535,400	331,50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99,450,000	
		6	1		246,535,400	334,500,000	33,450,000	33,450,000	33,450,000	33,450,000	33,450,000	33,450,000	33,450,000	100,350,000	

		7	1		249,535,400	337,500,000	33,750,000	33,750,000	33,750,000	33,750,000	33,750,000	33,750,000	33,750,000	101,250,000	
		기준층	19		252,535,400	340,50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102,150,000	
076.3049D	54	1	1	87,948,200	222,551,800	310,50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93,150,000	
		2	2		228,551,800	316,50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94,950,000	
		3	2		234,551,800	322,50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96,750,000	
		4	2		240,551,800	328,50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32,850,000	98,550,000	
		5	2		243,551,800	331,50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33,150,000	99,450,000	
		6	2		246,551,800	334,500,000	33,450,000	33,450,000	33,450,000	33,450,000	33,450,000	33,450,000	33,450,000	100,350,000	
		7	2		249,551,800	337,500,000	33,750,000	33,750,000	33,750,000	33,750,000	33,750,000	33,750,000	33,750,000	101,250,000	
		기준층	41		252,551,800	340,50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34,050,000	102,150,000	
084.9943A	82	1	3	97,963,400	238,136,600	336,100,000	33,610,000	33,610,000	33,610,000	33,610,000	33,610,000	33,610,000	33,610,000	100,830,000	
		2	3		246,136,600	344,100,000	34,410,000	34,410,000	34,410,000	34,410,000	34,410,000	34,410,000	34,410,000	103,230,000	
		3	3		254,136,600	352,10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105,630,000	
		4	3		262,136,600	360,10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108,030,000	
		5	3		266,136,600	364,100,000	36,410,000	36,410,000	36,410,000	36,410,000	36,410,000	36,410,000	36,410,000	109,230,000	
		6	3		270,136,600	368,10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36,810,000	110,430,000	
		7	3		274,136,600	372,10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111,630,000	
		기준층	61		278,136,600	376,100,000	37,610,000	37,610,000	37,610,000	37,610,000	37,610,000	37,610,000	37,610,000	112,830,000	
084.9998B	53	1	1	97,969,700	238,030,300	336,0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100,800,000	
		2	2		246,030,300	344,0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103,200,000	
		3	2		254,030,300	352,0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35,200,000	105,600,000	
		4	2		262,030,300	360,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108,000,000	
		5	2		266,030,300	364,0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6	2		270,030,300	368,0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36,800,000	110,400,000	
		7	2		274,030,300	372,0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11,600,000	
		기준층	40		278,030,300	376,0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112,800,000	
084.9790C	27	1	1	97,945,900	237,454,100	335,400,000	33,540,000	33,540,000	33,540,000	33,540,000	33,540,000	33,540,000	33,540,000	100,620,000	
		2	1		245,454,100	343,400,000	34,340,000	34,340,000	34,340,000	34,340,000	34,340,000	34,340,000	34,340,000	103,020,000	
		3	1		253,454,100	351,400,000	35,140,000	35,140,000	35,140,000	35,140,000	35,140,000	35,140,000	35,140,000	105,420,000	
		4	1		261,454,100	359,400,000	35,940,000	35,940,000	35,940,000	35,940,000	35,940,000	35,940,000	35,940,000	107,820,000	
		5	1		265,454,100	363,400,000	36,340,000	36,340,000	36,340,000	36,340,000	36,340,000	36,340,000	36,340,000	109,020,000	
		6	1		269,454,100	367,400,000	36,740,000	36,740,000	36,740,000	36,740,000	36,740,000	36,740,000	36,740,000	110,220,000	
		7	1		273,454,100	371,40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37,140,000	111,420,000	
		기준층	20		277,454,100	375,400,000	37,540,000	37,540,000	37,540,000	37,540,000	37,540,000	37,540,000	37,540,000	112,62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64.6939A	064.9643B	064.9803C	064.9803D	076.3262A	076.1810B	076.3191C	076.3049D	084.9943A	084.9998B	084.9790C
약식표기(타입)	64A	64B	64C	64D	76A	76B	76C	76D	84A	84B	84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2009. 4.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비,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 등 선택품목의 계약은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 산정)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료,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분양관련 분양조건은 분양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3조에 따라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10% 내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 결혼 및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3조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3조에 따라 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3% 내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제60조)
-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점수는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감정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 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0.10.27.)에 따라, 당 사업지는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며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64A	64B	64C	64D	76A	76B	76C	76D	84A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1	1	1	-	1	1	-	-	8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	-	-	1	-	-	1	1	-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1	1	1	1	-	1	1	1	-	8
	중소기업 근로자		1	1	-	-	-	1	-	-	1	-	-	4
	장애인	경기도	2	2	2	1	2	2	2	1	2	2	1	19
		서울특별시	1	1	1	1	1	1	1	1	1	1	1	11
		인천광역시	1	1	-	1	-	1	-	1	1	-	1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4	4	3	3	3	4	2	3	4	3	2	35
	서울특별시, 인천 거주자 (50%)		4	3	2	2	2	4	1	2	4	2	1	27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우선공급(75%)**	12	12	8	8	7	11	4	8	12	8	4	94
		일반공급(25%)	4	4	2	2	2	4	1	3	4	3	1	3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1	2	2	1	2	1	2	2	2	1	18
합 계			34	31	22	22	20	33	12	23	34	23	12	26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 일부개정안으로 지역우선공급 (용인, 경기도 거주) 50%,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시, 인천시)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th><th>내용</th></tr>
<tr><td>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td><td>•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예비포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잔여세대 배정 및 예비 입주자 선정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 유형별,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계약 취소, 부적격 세대로 확정되어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예비 입주자 계약 이후에도 남은 주택은 일반 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6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장애인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6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용인,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용인 및 경기도 우선 공급 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공급 세대수에서 낙첨된 용인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대상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배점 기준표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하였을 때,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계약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12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는 혼인신고일 이후에 출산된 미성년자인 자녀를 의미하며, 자녀의 출산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자녀를 출산한 날(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상 일자)이 혼인신고일 이후여야만 1순위 요건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해당 건설지역(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입주자 선정 순서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자녀수), 2순위 경쟁시 동일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 75% → 1순위 → 용인시 1년이상 거주자 → 미성년자녀수 많은 자(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 수도권거주자(용인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 미성년자녀수 많은 자(자녀수 같은 경우 추첨)

▷ 일반공급 25%→1순위→용인시 1년이상 거주자→미성년자녀수 많은 자(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수도권거주자(용인시1년 미만 거주자 포함)→미성년자녀수 많은 자(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 일반공급 25% 선정 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하여 산정합니다.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18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 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용인시 1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당첨자 동·호수 결정 등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감정원 청약홈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당첨자 및 동·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 사항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남는 세대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③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특별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 예비입주자 처리를 준용합니다.
유의사항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방문접수(견본주택)도 가능합니다. (견본주택 관람불가) • 인터넷 청약(청약홈(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신청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4조 및 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동일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예비대상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부적격 처리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 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 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청약신청자 중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용인시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용인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보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또는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순위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유의사항,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규칙 제3조제2항 각호 (3호, 5호, 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의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 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 됩니다.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 중복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세대 1건만 신청가능),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⑴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⑵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지역 간 전입 모집공고 당일까지 용인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400% 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⑶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 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 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 :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용인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에 해당하며 기타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접수 시 유의 사항 ⑴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⑵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⑶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⑷ 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에 속한 자.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가점제 적용 불가)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주택처분조건 신청인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는 인정되나 부양가족수 에서는 제외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해당지역]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용인시 1년 미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1순위 청약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제한대상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3) 2주택 (분양권 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4)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 못한 자.	
	2순위	모든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 제한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과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용인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1. 같은 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하며, 이하 이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일반공급 청약가점제 신청 시에만 해당)

1.「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 원(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09.0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09.01.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시 적용함.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변경전보다 큰 주택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면적 변경 불필요(지역별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 가능)
 ②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4.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 하여야 합니다.
6.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9.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11.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인 해약이 가능합니다.
12.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제3호)
13.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자료를 토대로 주소이전 현황 등을 분석, 정기적으로 위장전입 의심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Ⅳ 신청일정, 장소, 구비서류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11.17. (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 512-3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2020.11.18. (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1순위 (기타지역)	2020.11.19. (목) 08:00~17:30		
	2순위	2020.11.20. (금)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PT청약신청」⇒「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거주신청자가 기타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역지역·수도권(인천,경기) ·지방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20.11.26. (목)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0.12.08 (화)~2020.12.10. (목)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2-3)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yangwoo-gorim3.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11.26 (목) ~ 2020.12.05 (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11.26 (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Ⅵ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자격 검증서류 기간 및 장소

서류제출 기간	2020년 11월 27일 (금) ~ 12월 07일(화) (11일간)
서류 제출 장소	고림 3차 양우내안愛 더 센트럴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2-3)
서류 제출 대상	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전원

■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 견본주택에 비치
	O		무주택서약서		- 인터넷청약(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견본주택에 비치
	O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당사 홈페이지 게재,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불가)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또는 거주기간 확인 ※ 발급기간 :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기관추천 (일반) 특별공급	O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신청 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 특별공급	O		배점기준표	-	- 견본주택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전체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포함하여 상세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포함하여 상세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발급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이외 불가)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O		자격요건확인서	-	- 견본주택 비치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과거이력 전체발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O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O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이외 불가)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및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가점 산정기준표	-	- 견본주택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ㅍ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피부양 직계비속 직접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체포함하여 상세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직계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발급 ※ 발급기간 : 출생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O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0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길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휴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원본)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2019.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① 견본주택 비치

■ 일반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단,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불가)
	O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당사 홈페이지 게재,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견본주택 비치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또는 거주기간 확인 ※ 발급기간 :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전체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피부양직계비속 직접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당첨자와 동일 등본 등재 한정) 본인 및 세대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상세'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포함하여 상세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 직계존·비속 :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O	주택처분확약서	본인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경우 - 견본주택에 비치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 자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	O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접수 장소에 비치)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당첨자의 본인 발급용 ' 에 한함) 단,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증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주민등록표등·초본발급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관계 확인 등 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 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Ⅶ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기간	**2020년 12월 08일 (화) ~ 10일 (목) (3일간)**
계약장소	고림 3차 양우내안愛 더 센트럴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2-3)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 사후접수 신청자에게 공급한 이후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함.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계약시 공통서류	O		신분증	당첨자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인감도장	당첨자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O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당첨자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시 적격 통보를 받은 당첨자의 서류 일체
		O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확약서	해당주택	-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계약체결 장소 비치)
	O		계약금 입금증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O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홈페이지 양식 또는 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당첨 통보자		O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사항	O		위임장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 발급용은 불가함.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 중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임.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자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명칭, 동· 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야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하여 통보해야함.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나은행	743-910030-58405	하나자산신탁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
(예시 3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3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20.6.17 부동산 대책으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두창리, 맹리 제외) 지역이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업예정 지역인 고림동 또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사항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1) 서민실수요자 : 60%

※ 서민실수요자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가격(분양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 최초 7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뜻합니다.

(2) 무주택자 : 50%

(3) 1주택보유자(본건 제외) : 50%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조건부 특약 조건)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 기준입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4) 2주택이상 다주택자 (본건 제외) : 취급 불가

- 계약자별로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2018.09.13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단,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2020.02.20. 발표된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에 따라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 주택담보대출 가능.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중인 만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등의 예외 허용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알선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이 경우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음.

Ⅷ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10%)	2021.10.01(20%)	입주지정일(70%)
64A / 64C / 64D	25,100,000	2,510,000	5,020,000	17,570,000
64B	26,100,000	2,610,000	5,220,000	18,270,000
76A / 76C / 76D	26,600,000	2,660,000	5,320,000	18,620,000
76B	27,600,000	2,760,000	5,520,000	19,320,000
84A / 84C	27,900,000	2,790,000	5,580,000	19,530,000
84B	29,900,000	2,990,000	5,980,000	20,93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하나은행	743-910030-60105	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금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301동 1403호 홍길동 : 3011403홍길동 / 302동 201호 홍길동 : 3020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비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개인별 납부계좌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 12. 2. 개정시행)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발코니 미확장 세대는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 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별지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가격과는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상기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금액은 도급공사비에 포함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사업주체의 이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시행지침」제4조에 의거 발코니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임.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일정 별도 통지 예정)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 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본형세대(비 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신청 하여야함.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는 별도로 부담)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후 공개된 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였으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행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미확장 세대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하부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미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단열재로 인하여 발코니 천정 높이가 줄어듦.)
- 미확장 세대의 하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하부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부층 미확장세대의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바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단열재로 인하여 발코니 바닥이 높아짐.)
- 인접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에는 확장과 미확장 사이의 경계벽 일부분의 단열조치를 위해 미확장 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발코니 면적이 줄어듭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확장비용은 외부발코니 샤시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발코니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의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1. 시스템에어컨설치 옵션 내역 및 공급금액, 납부방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별	유상 옵션 선택	실내기	에어컨 설치 위치	제조사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	납입방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64 A, B, C, D형	선택1	2대	거실+침실1	LG전자	3,300,000	330,000	2,970,000
	선택2	3대	거실+침실1+침실2		4,500,000	450,000	4,050,000
	선택3	3대	거실+침실1+침실3		4,500,000	450,000	4,050,000
	선택4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900,000	590,000	5,310,000
76 A, B, C, D형	선택1	2대	거실+침실1		3,500,000	350,000	3,150,000
	선택2	3대	거실+침실1+침실2		4,700,000	470,000	4,230,000
	선택3	3대	거실+침실1+침실3		4,700,000	470,000	4,230,000
	선택4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00,000	620,000	5,580,000
84 A, B, C형	선택1	2대	거실+침실1		3,500,000	350,000	3,150,000
	선택2	3대	거실+침실1+침실2		4,700,000	470,000	4,230,000
	선택3	3대	거실+침실1+침실3		4,700,000	470,000	4,230,000
	선택4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00,000	620,000	5,580,000

▪ 시스템에어컨 옵션 유의사항

- 본 옵션 계약은 사업시행자인 ㈜경안개발과는 별도로 시공사인 양우건설(주)에서 공급하는 품목으로 양우건설(주)와 계약하고 상기 양우건설(주) 지정 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본 유상옵션 계약체결로 인하여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실내기와의 연결배관이 일부 노출되어 세대내 사용공간에 제약이 발생할수 있고, 본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이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은 불가하다는 사실, 운전소음이 발생할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설치되는 거실의 스텐드형, 침실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관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공급금액은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설치되는 거실의 스텐드형, 침실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관 설치에 따른 당초 기본형 설치품목의 미설치 비용을 공제하여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시스템에어컨 공사비-기본형 냉매관 설치공사비=시스템에어컨설치 공급금액)

2. 하이브리드쿡탑설치 옵션 내역 및 공급금액, 납부방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별	제조사	하이브리드쿡탑	납입방법	
		공급가액	계약금(정액제)	잔금
64 A~D형 / 76 A~D형 / 84 A~C형	SK매직 (하이라이트1구+인덕션2구)	850,000	100,000	750,000

▪ 하이브리드쿡탑 옵션 유의사항

- 본 옵션 계약은 사업시행자인 ㈜경안개발과는 별도로 시공사인 양우건설(주)에서 공급하는 품목으로 양우건설(주)와 계약하고 상기 양우건설(주) 지정 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옵션 미 선택시 3구 가스쿡탑으로 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쿡탑은 발코니 확장시 선택이 가능하며, 유상옵션 금액은 기존 가스쿡탑 미설치, 소방법령에 따른 자동식 소화기 형식변경등의 증감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하이브리드쿡탑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단종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옵션 및 하이브리드쿡탑 옵션 납부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467-910009-13804	양우건설(주)

※ 상기 계좌는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 및 하이브리드쿡탑설치 유상옵션 납부계좌로서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301동 1403호 홍길동 : 3011403홍길동 / 302동 201호 홍길동 : 3020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지정된 계약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금액는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무상 선택 품목 안내

▪ 침실2, 침실3, 가변형 벽체

주택형	위치	침실2, 3 선택형1_기본형	침실2, 3 선택형2_침실 확장형	비 고
전 주택형	침실2, 3	침실2, 침실3, 거실 경계가변형 벽체 설치	침실2, 침실3 경계 가변형 벽체 미설치 (침실3 "문" 미설치)	

- 가변형 벽체 미시공시 배선기구 위치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선택1 기본형 드레스룸, 선택2 알파룸

주택형	위치	선택형1 _ 기본형(드레스룸)	선택형2 _ 알파룸	비 고
76B	침실1	가구도어, 시스템선반, 화장대 제공	알루미늄 슬라이딩 도어 시공 (화장대, 시스템선반 미제공)	

※ 가변형벽체, 알파룸 시공·미시공으로 인한 분양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 침실1 일반수납형 붙박이장 및 TV수납형 붙박이장 선택

구분	64A / 64B / 64C / 64D	76A / 76B	76C / 76D	84A / 84B	84C	비 고
일반수납형 붙박이장	선택가능(o)	선택가능(o)	선택가능(o)	선택가능(o)	선택가능(o)	
TV수납형 붙박이장	선택가능(o)	선택가능(o)	**선택불가(x)**	선택가능(o)	**선택불가(x)**	

▪ 추가 선택 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추가선택품목 계약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됨.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해제는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강마루,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품목

구 분	품 목	적용범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 품목
일괄선택 (개별선택 불가)	바닥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바닥재(강마루), 현관바닥(폴리싱타일), 걸레받이	바닥난방 +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현관디딤판 및 현관굽도리 (신발장, 현관장하부 제외)
	벽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벽지 및 벽체 마감(주방 및 욕실 타일마감 포함), 초배지, 아트월(타일, 우드판넬 등 일체포함), 걸레받이, 신발장 및 가구류	벽 석고보드(해당부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시멘트 몰탈(해당부위), 발코니 벽 도장
	천장	각실, 거실, 주방, 현관	천장지, 반자돌림(몰딩 포함), 우물천장(몰딩 등 마감일체), 인테리어 마감, 전동빨래건조대	천장틀위 석고보드, 소방감지기, 스피커
	조명기구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 제외)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등), 매입등기구
	욕실	공용,부부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대, 욕조, 샤워기 등), 샤워부스, 타일, 악세사리 일체, 수전, 욕실장, 욕실폰, 욕실휀	액체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전기 배관/배선
	주방	주방	주방가구 일체(상하부장 및 상판, 벽마감 포함), 악세사리 일체, 렌지후드, 수전, 음식물 탈수기, 주방TV폰, 가스쿡탑, 전기복합오븐	소방관련 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문	각실 출입문	현관 디지털 도어록, 각방 문틀 및 문짝도어록	현관문(일반도어록), 발코니 PL창호, 욕실문 가틀, 하부씰, 대피공간문
	가구 및 기타사항	각실	가구류 일체(신발장, 안방 드레스룸장/파우더장, 각종 선반, 주방 상하부장 등), 수전류(발코니, 세탁실)	설비배관(단부보호처리), 거실 월패드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 택 형	64.6939A(64A)	64.9643B(64B)	64.9803C(64C)	64.9803D(64D)	76.3262A(76A)	76.1810B(76B)
금 액	21,279,735	21,450,171	21,400,957	21,400,957	24,784,755	24,880,744
주 택 형	76.3191C(76C)	76.3049D(76D)	84.9943A(84A)	84.9998B(84B)	84.9790C(84C)	-
금 액	24,875,384	24,874,684	27,578,495	27,548,221	27,504,711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며, 마이너스 옵션계약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옵션 신청을 할 수 없음.
- 배선기구류 위치는 옵션세대와 상이 할 수 있으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 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에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 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건축법」제52조, 「건축법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시공책임은 시공자인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 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친환경주택의 성능 평가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기밀 창호	적용	기밀성 1등급(외기직접), 기밀성 2등급(외기간접)
고효율기자재	적용	난방, 급수펌프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1개소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세대내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 기자재 및 동등이상 제품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내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설치
절수 설비(위생기구, 수전)	적용	세대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 분	총에너지 저감율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
단지평균	40%이상	40%이상

IX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3년 05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통보함)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지하주차장 등
※ 단지별 부대 및 복리시설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해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143,666,810,000원	제07812020-101-0001800호

■ 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X 유의사항

■ 다음 유의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계약 전 주변 도로 여건, 인근 건물신축계획 등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가 가능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귀속하고, 별도의 구상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20년 6월 18일 승인**된 사업계획승인(변경)도면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입주민의 집단민원,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오염된 자재에 대해서만 교체 시공됨(해당 세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이용및보존에관한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시행에 따라 분기별 감리보고 시 입주예정자의 참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정산하지 않기로 함.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실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법시행규칙」제13조 제5항에 의거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변경,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동급 이상 변경 등 경미한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과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및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승인도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분양 및 계약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은 연출용임.

- 견본주택은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니,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상담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 형태, 창호 형태, 측벽디자인, 외부 색채, 외벽 로고 사인, 외벽 마감, 문주, 식재, 바닥 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 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의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견본주택 세대 내부에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고, 조감도 및 배치도, 식재, 색상, 각종 시설물, 인근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 내 단지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람.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내 전시모형 및 사업계획승인(변경)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마감자재 내용은 Type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을 축조하지 않은 주택형 및 Type에 대한 평면 및 마감재와 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 명칭과 동 번호, 각 시설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 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우선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에 준하여 시공 설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각종 광고, 홍보유인물(홍보 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인쇄제작상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관리사무실, 경로당,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시 입주자는 동의

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재 자체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의 특성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보수등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신탁사, 보증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중도금대출,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조정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협의 후 최종확정 시공될 수 있음.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지상 노출된 환기 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 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자체의 소방시설임을 인지하시기 바람.
- 선택품목의 경우 당해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가격이 책정될 수 있으니 별도의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어떠한 권리주장도 주장할 수 없음.
- 주거공용 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전실 및 홀 등은 주거공용 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림.
- 발코니 개별 확장 공사, 마이너스 옵션 개별 마감재 공사, 별도 품목(시스템에어컨 등) 설치 공사 등 본 아파트 공사와 무관한 공사는 사용승인 이후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할 경우 가능하며, 이에 따른 하자보수 및 법규준수, 민원해결 등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기에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단지 외부여건

- **본 아파트계약자의 초등학생은 인근 공동주택사업(고림H5블럭, 고림H6블럭, 고림진덕지구 등)의 진행에 따라 가칭)고유초 신설 시에 가칭)고유초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사업자의 사업추진 일정변경,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결과, 학생 배치여건 변경에 따라 신설학교 개교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가칭 고유초) 개교 전 입주 시에는 입주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계약자의 중학생은 인근 공동주택사업(고림H5블럭, 고림H6블럭, 고림진덕지구, 보평지구, 보평2지구 등)의 진행에 따라 가칭)고유중 신설 시에 용인2중학군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사업자의 사업추진 일정변경,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결과, 학생 배치여건 변경에 따라 신설학교 개교 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 전 입주 시에는 입주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계약자의 고등학생은 기존 고등학교 또는 설립예정 고등학교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부지 인근에 추진중인 가칭)용신고 설립이 지연될 경우에는 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단지 외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 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 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 · 확장(예정)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주변 공원계획은 미확정 상태이며, 용인시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인시 및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표시한 단지 외부의 공원 및 보행자도로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고림H6블럭 사업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단지 북측의 중로1-2호선(길이 251m), 단지 동측의 완충녹지 4호(면적 1,459㎡), 단지 서측의 완충녹지 9호(면적 1,695㎡) 임
- 고림지구 서측 사업지 경계에서 경안천변으로 대지정공 약300m, 한국자동차공업 약400m, 한국오바라 약500m, 동성산업 약600m, 칸나 약700m, 디엠푸드 약800m에 위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고림지구 동측 사업지 경계에서 1-54호선 우측으로 따숲상가 부지가 약300m, 고림진덕지구 사업예정지가 약500m에 위치하고 있음
- 고림지구 서측 경안천변 중로1-1호(159m), 1-2호(23m), 1-3호(533m)는 위·수탁구간으로 용인시가 공사를 시행하며 입주시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고림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은 각 블록별 사업자가 개별 설치하여 설치시기가 상이 하므로 타 블럭 사업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입주 시까지 설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고림지구 내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 등의 위치 및 규모는 향후 타 블록 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시 부여된 조건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가 지연될 경우 예정일에 따른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책임지고 입주전까지는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기반시설로 인한 입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주택단지 남서측 으로는 고림1차 양우내안애 에듀파크가 위치하며, 동, 서측 으로는 25M 도로가, 북측으로는 자연녹지가 위치하고 있음.
- 주택단지는 15~25미터 도로변에 접하여 있고 도로변에 위치한 동과 세대는 도로 소음과 먼지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며, 학교와 근접한 동과 세대는 학교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불편할 수 있음
- 주택단지의 도로는 보차도 혼용으로 7미터 이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 주차공간은 세대당 1대 이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나, 각 세대당 차량보유 대수에 따라 주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 후 주차장 부족에 따른 증설 요구는 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또는 분양계약체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주차장은 각 동 지하주차장, 동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 주차에 따른 불편과 주차 후 이동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함(공동주택 5개소, 근린생활시설 1개소)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에서 이용 시 동선이 길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며, 시설 주변으로 소음, 악취로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는 1층 필로티 및 지상부에 위치하며, 세대당 0.2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가 많은 동의 경우 자전거보관소가 부족할 수 있으며, 각 세대에서의 접근이 불편 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회차 공간 시설에 근접한 동과 세대는 차량의 통행에 따른 소음 발생 등으로 불편할 수 있음.
- 단지 내 위치한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등에 근접한 세대는 소음발생 등으로 불편할 수 있음
- 각 세대 난방은 개별난방임
- 도로변과 접하여 있는 동은 건축한계선 3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 별도의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며, 차폐식재로 인한 외부전망이나 조망이 불편할 수 있음
- 고림지구내 기반시설은 각 블록별 사업자가 각각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타 블록의 사업지연시 고림지구내 기반시설(도로 등) 설치가 지연될 수 있어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기반시설설치계획(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공장지대 주변으로 산업활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불편할 수 있음
- 주택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에 대하여는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바랍니다.
- 카탈로그 상에 차량 진출입동선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입주 시 교통불편이 예상될 수 있음
-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될 수 있음
- 본 사업지는 사업추진 여건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내 타 토지의 용도,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단지 북측과 서측에 고진역과 용인경전철 노선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동남측으로 용인서울병원이 인접해 있으며, 용인서울병원내 장례식장이 운영중임.
- 향후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입주 후 피해는 용인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단지의 명칭, 동표시, 동번호, 그래픽, 조경등은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자문)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에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임.
- 휴게소, 어린이놀이터,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생활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하여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 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판상형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전조등에 의 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적으로 동선 계획되어 있으나,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 등 단지 내 주차장은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지상1층에 별도구획 설치될 예정이며,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아파트 차량 동선과 공동으로 사용됨.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 2개동 18개호실로 구성될 예정임.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지붕은 입주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일부 동의 1층 부분은 필로티 또는 1층 세대가 위치하오니, 견본주택내 전시모형 및 사업승인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출입구 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한 건축도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2대(근린생활시설 포함)로, 총 760대[아파트 지하주차장 727대, 지상주차장 33대(일반형주차 391대, 확장형주차 230대, 장애인주차 26대, 경형주차 73대), 여성일반형주차 20대, 여성확장형주차 20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당 차량소유 증가로 주차대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계획 및 주차동선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분양받은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또한, 단지내 시설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또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 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공동시설에는 헬스시설 등이 설치되며, 소음의 발생에 따라 시설 내부의 기타시설 및 시설 외부 인접 세대에 생활권 침해를 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 시설은 실 시공 시 변경(준공도면에 반영됨)될 수 있으며, 인허가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작은 도서관 등)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의 형태, 내부구조, 가구 및 집기류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데크 형태 및 입면(옹벽, 주차출입구, 커뮤니티 및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도열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름.
- 각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 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음.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각 동의 외창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며, 도시가스 계량기는 원격검침 계량기로 설치됨.(유효기간 만료등 계량기 교체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기본형,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냉방기기(에어컨)실외기가 세대내 발코니에 설치되어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의 경우 단지 내 통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301동은 중로2-3호 및 중로1-54호 도로에 접해있어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자장 부근에 배치되어 저층 세대의 경우 차량소음 및 자동차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부대복리시설이 동 반대편에 배치되어 이동 거리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02동은 중로1-54호 도로에 접해있어 저층 세대의 경우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부대복리시설이 동 반대편에 배치되어 이동 거리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03동은 중로1-2호 및 중로1-54호 도로에 접해있어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주민운동시설이 부근에 배치되어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부대복리시설이 동 반대편에 배치되어 이동 거리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04동은 중로1-2호 도로에 접해있어 저층 세대의 경우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보행자 전용출입구가 부근에 배치되어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부대복리시설이 동 반대편에 배치되어 이동 거리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05동은 중로1-2호 도로에 접해있어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보행자 전용출입구, 주민운동시설이 부근에 배치되어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306동은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중로1-1호 및 중로1-2호 도로에 접해있어 경전철 높이에 세대 조망 간섭 및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주민운동시설이 부근에 배치되어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307동은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중로1-1호 및 중로2-3호 도로에 접해있어 경전철 높이에 세대 조망 간섭 및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지상주차장이 전면에 배

치되어 저층 세대의 경우 차량소음 및 자동차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308동은 중로2-3호 도로에 접해있어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부근에 배치되어 저층 세대의 경우 차량소음 및 자동차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므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시 견본주택과 상이 하며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상의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날개 벽체 등의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 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함.
 -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 고정형 가구 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도배지, 마루판 등의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필로티가 설치 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각 세대에 별도 구획된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분양카탈로그 및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 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비확장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저층 석재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창호 Size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세대(기본형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인허가된 설계도면에 기준하여 시공함. (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세대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사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본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신발장 및 붙박이장 배면은 도배지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주방가구, 붙박이장 하부에는 마루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매도청구 진행사항

▪ **2019가합13776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2020. 04. 2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감리회사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감리금액 (원)	비고
건축	㈜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32-81-12608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 569길 33(세곡동)	1,600,916,900	VAT 포함
전기	㈜한국전설엔지니어링	215-81-82826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21길 11, 한일빌딩 2층	467,830,000	
소방/통신	㈜럭키기술단	135-81-2363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58, 301호(마평동)	343,000,000	

■ 사업주체, 시공사 및 건축설계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주체	주식회사 경안개발	134511-0352275	경기-주택2018-025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39, 디 202-2 (중동, 라비스타)
시공사	양우건설 주식회사	110111-0618194	서울-주택1989-002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5길 10
건축설계사	㈜정현종합건축사사무소	110111-2695570	건축사자격번호 제14174호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6 1층(대치동, 새마을운동 중앙회)
	㈜민영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10111-3685455	건축사자격번호 제5172호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520호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2-3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yangwoo-gorim3.co.kr

■ 분양문의 : 1661-4648